

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과

1992. 4. 13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문교사회위원회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2년 4월 1일

○ 회부일자 : 1992년 4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제 77회 임시회

○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2. 4. 9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보사환경국장 정태현)

가. 제 안 이 유

의료보호법(법률 제4353호, 91.3.8),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3461, 91.9.6), 동법시행규칙(보건사회부령 제883호, 91.10.10)이 전면 개정되고,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의료보호 진료비의 본인부담 및 대불 기준(보건사회부고시 91-83호, 91.12.18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 요 골 자

○ 의료보호대불금 분할상환기간 조정 "1년 내지 3년" → "9월 내지 3년".

(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, 조례 제5조 제2항)

○ 대불금 결손처분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던 것을 "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"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, 군수가 결정토록 함. (의료보호법 제18조, 조례 제5조 제2항)

- "의료보호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납" 삽입.
(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제4항, 조례 제7조 제1항)
- "의료보호기금 운용현황의 분기보고" 조항 신설.
(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9조, 조례 제7조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영만)

- 가. 의료보호법(법률제4353호, 91.3.8), 동법시행령(대통령령제13461호, 91.9.6), 동법시행규칙(보건사회부령 제883호, 91.10.10)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.
- 나.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개정으로 대불금 결손처분시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하고,
- 다.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개정으로 100,000원 미만의 대불금 분할상환기간을 1년에서 9월로 조정하였으며,
- 라.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"의료보호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납"토록 명시되었고,
- 마.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"의료보호기금 운용현황을 분기보고" 토록하여 그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과 현행 조례의 字句등을 합리적으로 정비,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원 안 가 결

7. 소 수 의 건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개정조례안

나. 신.구문 대비표